

운영규정의 개요

1.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재가 서비스 이용 대상	- 65세 이상 질병과 노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 기타 시설장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용 정원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한다.
모집방법	- 장기요양제도 홈페이지 및 블로그, 현수막, 전단지, 기존 수급자 및 근로자소개 등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계약서 재작성하고 재계약 실행한다. -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 표준 수가 (2025년)	-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원)<table><tr><td>등급</td><td>1등급</td><td>2등급</td><td>3등급</td><td>4등급</td><td>5등급</td></tr><tr><td>한도액(원)</td><td>2,512,900</td><td>2,331,200</td><td>1,528,200</td><td>1,409,700</td><td>1,208,900</td></tr></table>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 (원)<table><tr><td>제공 시간</td><td>30분 이상</td><td>60분 이상</td><td>90분 이상</td><td>120분 이상</td><td>150분 이상</td><td>180분 이상</td><td>210분 이상</td><td>240분 이상</td></tr><tr><td>수가</td><td>17,450</td><td>25,320</td><td>34,120</td><td>43,430</td><td>50,640</td><td>57,020</td><td>63,530</td><td>70,080</td></tr></table> *본인부담금 15%,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권리: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요청권리 등 - 의무: 월 이용료 납부의무,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 정보제공,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등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때 등 - 해지의 의사를 수급자는 7일,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3.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 기관은 대상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 기관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 수급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물 소독 및 세척, 안전을 위해 반입물품 제한 등
--------------------	--